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69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임호선 · 차지호 · 임미애
김주영 · 한민수 · 양부남
윤종균 · 박선원 · 이춘석
백승아 · 민홍철 · 서영석
이상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

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4조·제4조의2·제12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를 “기부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

다. 「민법」·「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제외한다)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라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도 모금 및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법인의 기부) ① 법인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에 따라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②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법인의 범위와 기부 방식, 기부 상한액 등 법인기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를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u>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 ----- ----- <u>기부</u> <u>자로부터</u> ----- ----- -----. 2. (현행과 같음) 3. “기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자</u>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u>자</u> 다. 「민법」·「상법」 등 <u>에 따라 설립된 법인</u>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u>지방자치단</u>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u>지방자치단</u>

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

체는 기부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제외한다)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라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도 모금 및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법인의 기부) ① 법인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따라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②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법인의 범위와 기부 방식, 기부 상한액 등 법인기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

원)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